

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추록

※ 이 추록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항상 첨부되어야 한다.

기입란 □에 “예” 및 “적용”의 경우는 “√” 표시로, “아니오” 및 “비적용”의 경우는 “-”표시로 기입하고 * 표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

1. 선박의 중요 항목

가. 선 명:

나. 선박번호:

다. 총 톤 수:

재화중량톤수(유조선의 경우):

라. 건조일:

1) * 건조계약일/개조계약일:

2) * 용골거치일/개조개시일:

3) * 인도일/개조완료일:

마. 선박의 용도:

2. 분뇨오염방지설비

가. * 분뇨처리장치/분뇨마쇄소독장치/분뇨저장장치 □

나. 외부배출관 □

3.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

가. 이 선박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(* 통합/기름/유해액체물질)를 갖추어 두고 있다. □

나. 이 선박은 선박 대 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갖추어 두고 있다. □

다. 이 선박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갖추어 두고 있다. □

4. 기름오염방지설비

가. 기관구역

1) 기름여과장치

가) 기름여과장치(15PPM) □

나) 경보장치 및 자동배출정지장치를 갖춘 기름여과장치(15PPM) □

2) 배출관장치 □

3) 선저폐수저장장치 □

탱크:

용적: m³

4) 누유방지장치 ☐

5) 유성찌꺼기 탱크

탱크	용적(m ³)	탱크	용적(m ³)
총계			m ³

6) 소각설비(* 소각기 또는 유화장치) ☐

나. 화물구역(유조선에 한함)

1)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☐2) 평형수배출관 장치 ☐3) 혼합물탱크 ☐

탱크	용적(m ³)	탱크	용적(m ³)
총계			m ³

4) 분리평형수탱크 ☐

탱크	용적(m ³)	탱크	용적(m ³)
총계			m ³

5) 맑은평형수 탱크 ☐

탱크	용적(m ³)	탱크	용적(m ³)
총계			m ³

6) 화물창원유세정설비 ☐7)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☐8) 이중선체구조기준(* 이중선체구조/이중선저구조) ☐

9) 단일선체유조선이 이중선체구조를 갖춘 날 ()년 ()월 ()일

10) 단일선체유조선으로 운항할 수 있는 화물 (중질유)/(중질유 외의 기름)

- 11) 펌프룸의 이중선저구조 ☐
- 12) 기름유출(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) 방지구조 ☐
- 13) 씨체스트밸브 및 선내측격리밸브의 구조 ☐
- 다. 연료유탱크의 이중선체구조 ☐

5.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(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의 경우만 해당함) ☐
- 가. 예비세정장치 ☐
- 나. 배출관장치 ☐
- 다. 수면하 배출장치 ☐
- 라. 통풍세정장치 ☐
- 마. 스트리핑장치 ☐
- 바.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☐

6. 대기오염방지설비

- 가. 오존층파괴물질(* 할론/염화불화탄소/염화불화탄화수소) ☐
- 나. 질소산화물 ☐

구 분	기관 1	기관 2	기관 3	기관 4	기관 5
제조사 및 모델					
제조번호					
정격출력(kW)					
정격속도(RPM)					
주요개조일					
기준(Tier) 1					
기준(Tier) 2					
기준(Tier) 3					
기타사항					

- 다. 황산화물 ☐

황 함유량 기준	연료유	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	대체연료
3.5% m/m 이하			
0.5% m/m 이하			
0.1% m/m 이하(배출규 제특별해역 내에 한함)			
0.05% m/m 이하			

라. 휘발성유기화합물(유증기수집 제어장치) ☐

마. 선내소각기(*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각기/일반
형 소각기) ☐

이 추록의 모든 기록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 에서 발행하다.

지방해양수산청장 ☐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☐

선급법인의 장 ☐